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1 철도안전법위반
피 고 인	우○○ (62 -1), 노동 주거 경북 의성군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검 사	이준석(기소), 김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0:25경 대구 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대구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권OO(남, 5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OO 작성의 진술서

1. 역무원증(권OO)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_____